

#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97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※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삭제(구 제2조제2항, 제3조)

○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.

※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제1항

### 나. 협의회 재정 관련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운영 조항 삭제(구 제9조)

○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# 다. 그 밖의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에 맞춰 개정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

###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###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### 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7. 19.~8. 08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 완료(5): 남해, 하동, 창녕, 함양, 합천

(7) 법제처 입법컨설팅: 전부 반영함.

##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 등)** ①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3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4조(회장의 직무)**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장은 협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협회에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